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 선고 2019가단40063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변호사 최동욱

피 고 1. 주식회사 C

2. D

3. E

변론 종결 2020. 4. 28.

판결 선고 2020. 6. 2.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2,949,728원 및 그 중 218,319,024원에 대하여는 2018. 10. 21.부터, 5,343,402원에 대하여는 2018. 11. 26.부터, 70,544,934원에 대하여는 2019. 3. 29.부터, 86,863,118원에 대하여는 2019. 4. 13.부터 각 2019. 12. 17.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3건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피고 D, E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

〈표1: 보험계약 내역〉

순번	증권번호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원)	보험기간	보증내용	증거
1	F	주식회사 G	282,439,852	2018.01.26. ~2018.08.09.	선지급대금 반환지급보증	갑1의2,3
2	H	주식회사 G	139,125,061	2018.05.16. ~2018.11.30.	선지급대금 반환지급보증	갑2의2,3
3	I	주식회사 G	197,406,003	2018.07.09. ~2019.01.18.	선지급대금 반환지급보증	갑3의2,3

나. 피고 회사의 대금반환 연체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 381,070,478원을 지급하였다.

〈표2: 보험금 지급 내역〉

순번	지급일	이행보증보험	지급액(원)	증거
1	2018.09.20.	표1 순번 1	218,319,024	갑1의5
2	2018.10.26.	표1 순번 1	5,343,402	갑1의6
3	2019.02.26.	표1 순번 2	70,544,934	갑2의5
4	2019.03.13.	표1 순번 3	86,863,118	갑3의5
계			381,070,478	

다.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보험사고 발생으로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원고가 공시하는 연체이율(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는 연 9%)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 1,879,250원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 지연손해금 산정 내역>

지급 보험금	원금(원)	기간(30일)	이율	지연손해금(원) ¹⁾
표2 순번 1	218,319,024	2018.09.21.~2018.10.20.	연 6%	1,076,641
표2 순번 2	5,343,402	2018.10.27.~2018.11.25.	연 6%	26,351
표2 순번 3	70,544,934	2019.02.27.~2019.03.28.	연 6%	347,892
표2 순번 4	86,863,118	2019.03.14.~2019.04.12.	연 6%	428,366
계				1,879,250

[인정근거]○ 피고 회사, D: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E: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D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382,949,728원(=원금 381,070,478원 + 지연손해금 1,879,250원) 및 그 중 218,319,024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30일이 지난 2018. 10. 21.부터, 5,343,402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30일이 지난 2018. 11. 26.부터, 70,544,934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30일이 지난 2019. 3. 29.부터, 86,863,118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30일이 지난 2019. 4. 13.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2. 1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382,949,728원 및 그 중 218,319,024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30일이 지난 2018. 10. 21.부터, 5,343,402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30일이 지난 2018. 11. 26.부터, 70,544,934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30일이 지난 2019. 3. 29.부터, 86,863,118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30일이 지난 2019. 4. 13.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2. 1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G이 피고 회사의 물량 보유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물품대금을 먼저 지급했고, 피고 회사 대표인 피고 D가 물품대금을 유용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다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 주장 사정들은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보증금 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도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E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 요지

원고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5조의 통지의 무, 제7조의 보험기간 갱신 고지의무, 제8조의 채무자 신용정보 제시의무를 위반하였고, 보증인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위 규정들은 모두 강행규정이다. 원고가 위 각 의무를 위반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 E은 책임이 없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에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보증인보호법 제2조 제1호는 '보증인'이란 민법 제429조 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사람을 뜻한다고 규정하면서, 나목에서 '기업의대표자, 이사' 등을 들고 있다.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보증계약'이란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 없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그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에 의하면, 기업의 이사는 보증인보호법상 보증인에 해당하지 않고, 그가 체결한 보증계약에 대하여는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E이 2017. 11. 16.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달 29. 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보험사고 당시에 그 지위에 있었던 사실, 피고 E이 원고와 각 연대보증약정을 할 당시 계약자(피고 회사)와의 관계란에 '대주주'로, 입보사유란 '경제적 이익을 공유'로 각 기재하면서, 보증인보호법 제2조에서 정하는 보호대상 보증인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서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이사인 피고 E은 보증인보호법상 보증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와 체결한 각 연대보증약정에 대하여는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 E의 위 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기

1) 산정식: 원금 $\times$ 30일/365일 $\times$ 6% (원 미만 버림)